4-1-1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2008. 10. 1. 제정 2025. 10. 16. 개정

주무부서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리인"이라 함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변리사를 말한다.
- ② "발명의 공개"라 함은 학위 논문을 포함한 논문 발표, 학회지 등의 간행물 발표, 학회 연구초록 또는 포스터 발표, 시작품 전시, 공개용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을 말한다.
- ③ "대표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에 참여한 교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발명의 기여도 가 가장 높은 발명자를 말한다.
- 제3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직무발명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양식을 통합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5.>
 - 1. 발명신고서 『지재권 제1호 서식』 가. 관련 연구과제 나. 발명의 공개여부 다. 공동출원인 라. 심사청구 유무 및 출원목적 마. 해외출원여부 바. 출원완료 희망일 사. 기술분류 아. 지식재산권 및 참고문헌 조사 자. 자기기술 평가 차. 선행기술자료조사서 카. 기술개요
 - 2. 기술의 상세설명서(명세서) 『지재권 제2호 서식』
 - ② 발명자는 기술의 상세설명서를 다른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과 사건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규정된 양식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출원등의 사건진행) ① 직무발명규정 제8조(승계시점)와 제9조(출원 등)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승계결정통지 이후 2개월 이내 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출원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지식재산권출원등록간접비를 계상한 외부지원연구과제와 관련한 출원진행은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다.
 - ② 이미 출원을 완료한 건의 출원서지사항을 보정할 경우 특허 결정전까지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서지사항 보정 신청서 『지재권 제3호 서식』
- ③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검토 후 발명자가 심사관의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견서 제출을 포기할 때에는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의견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학협력단은 해당사건이 특허결정되면 지체 없이 특허등록을 하고 등록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건이 최종 거절 결정된 경우 산학협력단은 발명자 및 대리인과 협의하여 거절불복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발명의 공개) ① 출원하려는 발명을 공개하였거나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출원 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하여 출원시 공지예외적용을 하지 않아 특허거절이 된 경우 산학협력단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발명자는 추후 다른 발명의 출원진행시 경비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② 발명이 이미 명백히 공개되어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발명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공개정도가 미비한 경우, 대리인 및 발명자 검토를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권리소유 및 비용부담) ① 교직원의 직무발명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학교의 단독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지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물인 경우 지원기관과의 서면으로 약정한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② 공동 출원 및 등록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다음각 호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연구비 지원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전액 지원기관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해당 연구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계약서 및 별도 협약에 의거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2. 연구비 지원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약정된 비용 부담율(또는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 3. 기술이전과 관련한 공동출원 등 기타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 ③ 공동출원인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출원하며, 그 기관의 대표자 개인은 출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외부지원연구과제 결과물이면서 내부발명자가 없는 출원의 경우(타 기관의 참여연구원이 발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과제 책임자 연구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7조(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지식재산출원등록비는 산학협력단에서 통합 관리하고, 지식 재산의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사업 화에 필요한 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출원건수의 제한) ① 산학협력단에서 제경비를 지원하는 국내출원은 교원 1인당(대

표발명자 기준) 연간 총 5건 이하(발명신고일 기준)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식재산권출원등록간접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 건수에서 제외하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간접비가 총 출원 경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대표발명자 기준)의 직전 연도 1월에서 12월(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 계약기준 연구비가 연간 총 6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 6건 이하, 연간 총 10억 이상인 경우 7건 이하의 국내출원 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계약기준 연구비는 본교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의 직전 회계연도 연구과제 계약 처리 완료 건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9.5.>
-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로 출원 지원이 가능하며 출원여부는 산학협력단이 결정한다.
- 제9조(해외출원경비의 지원 및 심의) ① 해외 출원을 희망하는 대표 발명자는 해외출원지 원신청서 『지재권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 기술의 다국가 출원 시 3개국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16.〉
 - ② 산학협력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외부 전문가의 기술 심사 평가(해외출원지원기술 평가표『지재권 제5호 서식』 활용)를 거쳐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6.〉
 - ③ <삭제 2025.10.16.>
 - ④ 제2항의 기술 심사 평가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개정 2025.10.16.>
 -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은 직전 회계연도 계약 기준 연구비 상위 5명 및 차상위 5명의 교원을 선정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각각 2건 및 1건의 PCT 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 ⑥ 제5항의 계약기준 연구비는 본교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과제 계약 처리 완료 건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9.5.>
 - ⑦ 산학협력단은 제5항에서 선정된 교원에게 당해 회계연도 내에 PCT 출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없음"으로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 등의 추가 요청에 따라 해외출원이 진행될 경우, 그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발명자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발명자의 산학협력마일리지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해외특허경비 신청서 『지재권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 제10조(유지 및 연차료 부담) ①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유지기간은 등록 후 6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6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그 유지여부는 위원 회에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1.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에게 통보
 - 2. 발명자 최종 의견서 제출(의견제출 없을 시 포기로 간주)

- 3. 최종의견 조율 후 위원회에서 결정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한다.
 - 1. 유지(지속적 보유) 2. 권리포기 3. 발명자 화원 4. 기타
- ③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이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대표발명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계속보유 및 특허양도, 이전기업 추천 등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대리인 선임) ① 국내 및 해외출원을 위한 대리인 선임은 산학협력단과 전담특허업무협약을 맺은 사무소에 한하며,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08.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원인 경우 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 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08.12.〉
 - ② <삭제 2024.08.12.>

부 칙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지식재산권출원등록간접비" 사용내역은 연구책임자 또는 외부지원기관에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5년동안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지식재산권출원등록간접비" 잔액은 산학 협력단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사용한다. 다만, 지원기관 관리규정에 따라 반납하거나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의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시행일 직전 회계연도(2020년도) 계약 연구비를 기준으로 "국내출원건수의 제한" 및 "해외출원경비의 지원 및 심의" 조항을 당해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24. 8. 1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0. 1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지재권 제 1호 서식] _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입력화면

			발명신 2	2 세 (양도중포함				
						일시제장	접수	- 早級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where the Owner, which is the Owner, where the Owner, which is the Owner, where the Owner, which is the Owner		
重犯刁怪	● 号拼解的 ① 6	선산용상						
발생의 영광(국문)								
발명의 평흥(영문)								
			항망지점	보(양도인) 발명기	042)			
선명	.44		四种	2040	주인등록변호	刀挫(%)	85	DENE
	177	33	-55	1,355	-1222211111112	100%	特官	CHUI
	平全							
	E-Mari							
	● Yes ① No							
	권재계정변호			검색	游戏母智功			
	2002							
관련 연구까지	AISS				用早秋智慧			
中21、位为	学为智				연구한리 건문가찬			
	당하면도기간		13-23		●8 72121	-		
	라제고유변호				71019	100 %		
	주관계관	중앙대학	당대학교 산학협력단					
	• Yes 🗇 No					454		
발명의 공개대부	공개유형	- 선택 -	÷		智王/向包/智科	0		
471 270	巴巴杜加(用編)							
■ W21	V synta∂	HANNES .			E 타기판 공동#	ili .		
십시청구유부			10.19.4		E 다가군 중중을	i e		
重型解除	 출원과 등시에 과제설적용 (0 Ut	5.7				
말랑의 현단계				4.2.2.2.2.2.2.2.2.2.2.2.2.2.2.2.2.2.2.2	原表別なる 門 /	(제품 테스트램과 기:	음식한 전 입국	
AIC 公司 可引	028 028							
추가면구 필요성 활용당한	[] 신제중제달	□ 288	nor Ha	зивис Б	72887C	5 DE		
祖知多想印草	028 028	14.49.9		CHOKE III	ALCOURT B	3 714		
	· 일반출원(學)	(적으로 신	교일로부터 4주	정도 소용)				
총원완료회약일	6 3388 B							
刀身被在	刀金星馬							
41 開幕	並訂足具备 선택성	#주십시오 <u>(</u>						
산업분류	習用			검색	해당선업			
자석자산경조시 주기 학회:	新 到世立				98			
KIPRIS 214	1177 1177 1177							58
WPS 84	선규성전달성							9
	문천명,저자레이지							
なごを包 取対以長	A Service Control of the Control of							
東川田田 松田村書	요박							3
								v

경기합의		용가기준			84		
785000 Ptd 03	대살기술의 핵심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청구한 작성되며 경쟁업체의 최田봉 계를 막을 수 있는가	61	0.2	03	04	0.5	
	기술동학과의 부합성	대설기술이 포함되는 기술공약 발전받장 및 동향이 됐다나 잘 부합되는가	6 1	02	03	€4	0.5
	대설기술대 혁식적인 기본(원천)발명인가(5) 제량발명인가(1)	01	Θz	ėз	© 4	0.	
	용래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한상되거나 전보한가	01	© 2	03	0.4	0:	
	신규설	타당성에 중영된 선기술(중래기술과 동알하지 않은 기술/인가	01	0.2	03	@4	03
사장규모 및 성장 설 상용화 가능성	사장규모 및 성장가능 합	대성기를 적용 제품 시장의 규모와 성장 후에가 여덟한가	61	© z	01	64	61
	상용화 가능성	대성기술의 성용하되며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01	0.2	03	0.4	0:
ASS	기술수명	대성기술의 탑약 활용도가 하느 정도인가 (도입기(5) 성장기-성숙기-성턴기 (1)	01	0.2	0.3	© 4	0.5
	산업적 따급효과(적용 범위)	대상기술이 적용가능한 시장 및 제품의 현대가 많은가.	61	ėχ	63	64	01
기술미건 등이상	사장진압을 위한 지왕, 규제 또는 장려요인들이 존재하는가	01	0.2	03	04	0:	
		8767					0

본 기술의 발명자(물)은 목처들원 후 공제시 것을 들의합니다. ② 보안등급 C 미하 (말병의 명원/적용본 ③ 보안등급 8 이하 (요약씨/기술의 제요	फ़ाद हम शह	견이라도 기술이건 사업회 기회를 가장 수 있도록 다음의 링금에서	ERSE
 보안등급 A 미하 (형세시 건문/발명산) 보안등급과 상환성이 해당겨술의 37 	고사)의 공개 하용		
발명자 요명사항			+
	rious	数量前資本外 数单前裂分離	Œ
경세서 정부 명세A 정부1	(다용받기 찾아보기	철부파일추가 철부파일삭제 DESCRIPTION1	

상기의 발명을 <작무발명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나 중계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 대확인 상기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건을 <작무발명규절~에 따라 중앙대학교 산약협약단에 암도합니다.

이 작인 ** 미지인

2013 년 11월 26일

선교자 o (29)

중앙대학교 신학협력단장 귀하

임시계장 참수 具是

[지재권 제 2호 서식] _ 기술의 상세 설명서

기술의 상세 설명서

- 1. 발명의 명칭
- 2. 발명의 목적
- 3. 배경기술 *논문의 introduction에 해당됩니다.
- (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 (2) 종래기술의 문제점
- 4. 발명의 내용
- (1)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종래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2) 기능 및 작용
- (3) 실시예
- * Materials & Methods + Results + Discussion에 해당됩니다.
- (4) 기타
- 5. 발명의 효과
- *논문의 Discussion에 해당됩니다.
- 6. 도면
-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 (2) 도면
- 도면 1
- 도면 2
- # 실제 작성하실 때에는 위와 같은 순서로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접수자	
관리번호	

	서지사항보정신청서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보정대상항목	□ 발명자 추가 □ 이 발명을 지원 □ 기타	□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재				
보정사유						
	보정내용					
	성명(국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발명자 추가	우편번호					
	주소					
	국적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이 발명을 지원한	연구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일부 정정 및 기타						
상기와 같이 출원서지시	나항 보정을 신청합니다	L.				
			년	월	일	
			대표발명자		(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당자 의견		담당	팀장	단장
	결 재		전결	

[지재권 제4호 서식] _ 해외출원지원 신청서

접수일	
접수자	
관리번호	

해외출원지원신청서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방법	□ PCT출원 □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출원					
출원희망국 (3개국 이하)						
발명자 의견 개진	별첨 1. 해당국에 대한 발명자 자체선행기술조사서(자유양식)					
상기와 같이 해외출원경비지원을 신청하오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발명자		(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담당자 의견		담당	팀장	단장
	결 재		전결	

[지재권 제5호 서식] _ 해외출원지원사업 기술 평가표

해외출원지원사업 기술 평가표

I. 기본사항

발명의 명칭				
심의위원	소속	이름	서명	

Ⅱ. 심의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선택			
	권리의 강도	대상기술의 핵심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청구항이 작 성되어 경쟁업체의 회피설계를 막을 수 있는가	<u>02 04 06 08 010</u>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대상기술이 포함되는 기술군의 발전방향 및 동향이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	<u>02 04 06 08 010</u>			
권리/기술성	기술속성	대상기술이 혁신적인 기본(원천)발명인가(5), 개량발명인가(1)	<u>02</u> <u>04</u> <u>06</u> <u>08</u> <u>010</u>			
진보성 신규성	진보성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향상되거나 진보 한가	<u>02</u> <u>04</u> <u>06</u> <u>08</u> <u>010</u>			
	신규성	타당성이 증명된 신기술(종래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기술)인가	<u>02</u> <u>04</u> <u>06</u> <u>08</u> <u>010</u>			
		대상기술 적용 제품 시장의 규모와 성장 추이가 어 떠한가	<u>02</u> <u>04</u> <u>06</u> <u>08</u> <u>010</u>			
시자/시어서 기수스며		대상기술이 상용화되어 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 는가	<u>02</u> <u>04</u> <u>06</u> <u>08</u> <u>010</u>			
		대상기술의 향후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가 (도입기 (5)-성장기-성숙기-쇠퇴기(1))	<u>02</u> <u>04</u> <u>06</u> <u>08</u> <u>010</u>			
	산업적 파급효과 (적용범위)	대상기술이 적용가능한 시장 및 제품의 형태가 많 은가	<u>02</u> <u>04</u> <u>06</u> <u>08</u> <u>010</u>			
		시장진입을 위한 지원, 규제 또는 장려요인들이 존재하는가	<u>02</u> <u>04</u> <u>06</u> <u>08</u> <u>010</u>			
	총합					

점수	둥급	지원국
90점 이상~	S	PCT, 3개국
85점 이상~90점 미만	A	PCT, 2개국
80점 이상~85점 미만	В	PCT 또는 1개국
80점 미만	С	지원 없음

Ⅲ. 총평

[지재권 제6호 서식] _해외특허경비 신청서 <개정 2025.10.16.>

접수일	
접수자	
관리번호	

	담당	팀장	부단장	단장
결 재				

산학협력단 해외특허경비 신청서 (산학협력마일리지 사용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직	위	대	학		학	과	
연구실전화	휴대경	전화			E-Mail			

2. 특허출원경비 신청 내역

발명의	국문 :								
명 칭	영문 :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									
총 적립금	집 행 액		신 청 액	잔	애				
※ 신청액은 최기	L 백만원 이상시 신	신청 가능(발명	g자 부담액내에서	H 지원)					
	산학협력단	해외특허공	경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	!청합니다.				
		٤	열 월	일					
			신청인	<u>l</u>	(인)				
중앙대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1. 해당 해외특허경비청구서 및 관련서류 일체

담당자 의견		지재권담당	팀장	단장
	결 재		전결	